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결 정 문

사건번호: KR-1800192

신 청 인: 아마존 테크놀로지스, 인크. (Amazon Technologies, Inc.)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변리사 구은경)

피신청인: 허승철

1. 당사자 및 분쟁 도메인이름

신 청 인: 아마존 테크놀로지스, 인크.(Amazon Technologies, Inc.) 미국 98108-1226 워싱턴주 시애틀 피오 박스 81226 (P.O. Box 81226 Seattle, WA 98108-1226

U.S.A.)

대리인: 김.장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39, 1층(내자동)

피신청인: 허승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 102동 708호

(정자동, 아이파크 분당1)

분쟁 도메인이름은 "amazon365.com"이며, 피신청인에 의해 (주)아이네임즈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37 한승베네피아 2층)에 등록되어 있다.

2. 절차의 경과

신청인은 2018. 10. 23.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 서울사무소(이하 '센터'라고 함) 에 분쟁 도메인이름의 이전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18. 11. 13. 센터는 등록기관에게 등록인의 정보를 요청하는 전자우편을 발송하였고, 등록기관은 2018. 11. 13. 센터에 등록인의 확인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주었다.

2018. 11. 13. 센터는 분쟁해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자우편을 통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송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기일이 2018. 12. 3.임을 통지하였다. 또한 같은 날 등기우편을 통하여 절차개시 통지 및 신청서 등 서류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8.12.3.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8.12.6. 센터는 보충규칙에 따라 정찬모 위원을 행정패널로 선임요청 하였고, 2018.12.6. 행정패널로서의 승낙 및 중립성과 독립성의 선언을 확인 받아 2018.12.10. 행정패널을 구성하였다.

3.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4년 미국에서 설립되어 도서, 의류, 식품 등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대표적 전자상거래회사로서 2017년 전세계 매출액은 미화 177,866,000,000달러 (한화 약 201조 4,332억 원)에 달하며, 한국을 포함한 50여개 이상의 국가에서 "AMAZON" 표장 및 이를 포함한 표장을 다수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2007년 이 사건 도메인이름인 "amazon365.com"을 등록하여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아마존을 비롯한 해외 사이트에서의 온라인 구매대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4. 당사자들의 주장

A. 신청인

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에서 확장자인 "COM"을 제외한의 "AMAZON365"는 "AMAZON"과 "365"로 구성되어 쉽게 "AMAZON"을 분리 관찰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표장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도메인 이름에 해당하며,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이용행태 또한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이 사건 웹사이트가 신청인과 어떠한 사업적 관련성이나 협조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을 야기하여 신청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B. 피신청인

피신청인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 및 판단

규정 제4조 (a)항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i) 신청인이 권리를 갖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ii) 등록인이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에 대한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 그리고

(iii)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상기의 사항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논점을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A. 상표·서비스표와 본 건 분쟁 도메인이름의 유사

이 사건 도메인이름의 요부인 "AMAZON365" 중 "365"는 일년을 가리키는 일상적 표현으로 그 합성으로 특별히 식별력이 높아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은 신청인 표장인 "AMAZON"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B. 피신청인의 권리 또는 정당한 이익

답변서 미제출 상태에서 미루어보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 이름의 요부와 관련하여 상표, 상호 등 아무런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신청인으로부터 "AMAZON" 상표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C. 피신청인의 부정한 목적

피신청인이 이 사건 도메인이름을 등록하기 전에 신청인의 이 사건 표장이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져 있었음이 2001년 대법원 판결 등 여러가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신청인 첨부자료 7과 8). 나아가 피신청인은 이 사건 도메인이름에 연결된 웹사이트에서 "아마존 365" 표장을 표시하고 "아마존 구매대행" 항목에서 신청인의 웹사이트에 기재된 제품명, 제품사진, 가격, 브랜드 등의 정보를 동일하게 옮겨와 게재하고, "아마존 원문보기"를 통해 팝업 링크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로(신청인 첨부자료 6)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이 사건 웹사이트와 신청인이 어떠한 사업적 관련성이나 협조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을 야기하는 바 전체적으로 신청인의 명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도메인이름이 등록,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6. 결정

위와 같이 검토한 결과, 본 행정패널은 '규정' 제4조 (a)항 및 '절차규칙' 제15조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에 대하

여 분쟁도메인이름인 < amazon365.com>을 이전할 것을 결정한다.

1인 행정패널

정찬모



결정일: 2018년 12월 20일